

회의수당 지급규칙 [1995. 2. 10] [규칙 제1호]

일부개정 1996. 3. 29 규칙 제 21호
1999. 5. 14 규칙 제 67호
2000. 2. 7 규칙 제 90호
2003. 5. 2 규칙 제138호
2003. 7. 24 규칙 제146호
2006. 7. 26 규칙 제192호
2009. 12. 14 규칙 제231호
2015. 4. 7 규칙 제29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2017. 12. 28 규칙 제327호
2023. 3. 2 규칙 제363호
2024. 3. 4 규칙 제39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회의수당지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3.29, 2015.4.7)

제2조(지급범위) ①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 제12조에 의해 이사회에 참석한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 (개정 96.3.29, 2003.7.24, 2009.12.14)
2. 직제규정 제5조의4에 의한 위원회에 위촉된 원외전문가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 (개정 2009.12.14)
3. 각종 연구업무 회의에 참석한 원외전문가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개정 2006.7.26, 2009.12.14)
4. 초청강연 외부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신설 96.3.29, 2009.12.14)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수당지급 대상자가 공무원일 경우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업무로 회의에 참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1일당15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12.14., 2023.3.2)

③제2항의 제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별도의 검토, 자문, 평가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12.14)

제3조(지급방법) ①회의수당 지급은 매 회의 개최시마다 지급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96.3.29, 2000.2.7, 2009.12.14)

②(신설 96.3.29) 삭제 (2000.2.7)

제4조(지급액) ①회의수당 지급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참석자의 사회적 저명도에 따라 100%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6.3.29, 99.5.14, 2003.5.2, 2006.7.26)

③원거리 거주자에게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6.3.29)

부 칙

①이 규칙은 원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이전에 지급된 수당은 이 규칙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96. 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14)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96.3.29, 99.5.14, 2000.2.7, 2003.5.2, 2003.7.24., 2006.7.26., 2017.12.28., 2024.3.4.)

회 의 수 당 지 급 기 준

(단위 : 원)

구 분	수 당 액
1. 이사회 참석수당	400,000원
2. 위원회에 위촉된 원외전문가 참석수당	300,000원
3. 삭제 (2000.2.7)	
4. 각종 연구업무회의에 초청된 원외전문가회의 참석수당	300,000원
5. 초청 강사료(시간당)	300,000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